#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 제17조 "<u>어떤 행위라</u>도 <u>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u>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통설>

1단계—인과관계: 야기적 관련성, 사실적 차원

2단계-객관적 귀속: 귀속관련성, 규범적 법적 차원

I. 의의 - 결과범과 침해범에서만 문제,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음

#### Ⅱ. 유형

#### 1. 기본적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직접적으로 인과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 **2. 이중적 (택일적):** 독약 10 + 10 → 10으로 사망

甲과 乙이 각각 丙에게 권총을 쏴서 丙이 사망한 경우처럼 <u>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u> <u>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u>이다. 이 때 甲과 乙의 행위는 丙의 사망에 대하여 <u>각각 인과관계가 인정</u>된다.

## |사례|

甲과 乙은 서로 의사연락 없이 각각 丙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서로 모르게 丙이 마실음료수에 <u>각각 치사량의 독약</u>을 넣었다. 丙은 그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하였다.

해설: 이중적 인과관계는 결과에 대한 원인관계가 규명된 경우이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형법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이나 제263조의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의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동시범에는 인과관계가 판명된 동시범과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동시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형법 제19조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를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하여 특별취급 하도록 한 규정일 뿐, 인과관계가 판명된 2인 이상의 정범으로서 동시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甲과 乙에게는 각각 살인죄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모두 인정되고, 따라서 제19조나 제26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 **3. 누적적 (중첩적):** 독약 5 + 5 → 10으로 사망

甲과 乙이 각각 <u>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투여하였으나 독약의 양이 합쳐져 치사량</u>이되어 丙이 사망한 경우처럼 각각 독립해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결과를 야기시킨 경우이다.

## |사례|

甲, 乙, 丙은 등산을 하기로 하였다. 甲은 평소 자신과 성격차이가 심한 丙이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등산가기 전날 밤 甲은 설사약을 탄 음료수를 丙에게 주어 마시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乙도 甲과 같은 생각으로 丙에게 설사약을 탄 간식을 주었다. 甲과 乙이 준 설사약은 각각만으로는 丙이설사할 수 없는 적은 양에 불과하였으나, 丙은 두 사람이 준 설사약을 모두 먹었기때문에 그 다음날 계속되는 설사로 인해 등산에 동행하지 못했다.

甲과 乙의 죄책은 상해미수죄(인과관계O+ 객관적귀속X= 인과관계부정)

#### Ⅲ. 학설-인과관계 이론

# 1.조건설

```
: 행위와 결과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
인과 ----- 연결
↓
```

조건설=과학 (가설적 제거, 인권보장x)

'그 조건을 가상적으로 제거하고 생각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조건은 결과에 대하여 원인이 된다'

< 비판> 가설적, 이중적 인과관계 설명X 인과관계 범위의 지나친 확대

# 2. 상당인과관계설 (종래다수설, 대법원)

: 경험칙상 결과발생에 상당한(개연성 높은)조건만이 원인

행위----'상당'---->결과

- (1)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당시 행위자 인식)
- (2)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당시 존재한 모든 사정 객관적 종합, 법관이 판단)
  - (3)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자, 일반인 중 우수한 자)

<비판>

상당성에 명백한 기준 없음(대법원의 모호한 판례) 상당성을 개연성으로 이해할 때 비유형적 인과관계 설명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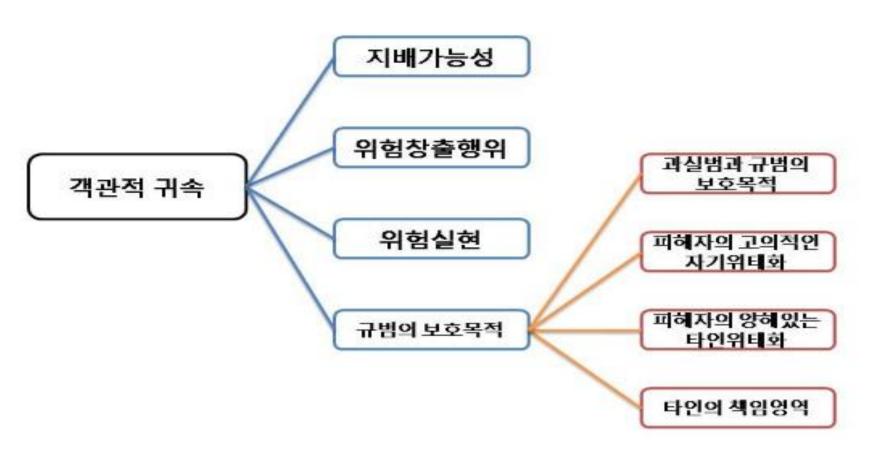
# 3. <u>합법칙적</u> 조건설(통설) -(good or bad존재)

:행위와 결과 사이의 합법칙적 연관 문제, 객관적귀속 이론과 가장 밀접

-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 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 '인과관계 인정
- = 경험칙 + 객관적 귀속(~탓이다) 평가=규범 행위----선행---->결과
- (1) 피해자의 특이체질 0
- (2) 가설적 인과관계 0
- (3) 인과관계의 중단 0
- (4) 추월적 인과관계 X
- (5) 이중적 인과관계 0
- (6) 중첩적 인과관계 0(미수)
- (7)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0

# 1.객관적 귀속

: 인과관계가 확인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수 있는지 확정짓는 이론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결과를 행위자에 귀속시키는 규범적, 법적 문제



# 2. 객관적귀속의 요건

## 가. 예견,지배가능성

법은 객관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발생한 결과는 <u>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지배 가능</u>한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요건이다.

# 나. 위험창출,증가행위

행위자의 행위가 법익침해의 원인을 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을 창출, 강화 시켜야 객관적 구성요건에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위험창출이 결여된 행위는 <u>행위반가치의 결여로 **가벌성이 탈락**</u>된다. - (위험감소, 허용되는 위험:X) vs (가설적 인과관계:O)

# 다.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

행위자에 의해 창출되거나 증가된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에 사실상 실현되었을 때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위험창출행위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위험실현이 결여된 경우에는 결과반가치의 결여로 미수가 된다.

# 라. 규범의 보호목적

인과과정의 진행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당해 범죄구성요건의 임무가 아닐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규범의 보호목적이 결여된 때에는 <u>가벌성이 탈락하거나 미수</u>가 된다.

### 3. 규범의 보호목적의 예외

## (1) 과실범과 규범의 보호목적

행위가 <u>허용되지 않은 위험</u>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결과를 제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의규범의 보호목적이 아니고 <u>반사적 보호</u>에 불과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ex) 운전자 甲이 규정을 위반하여 乙의 자동차를 추월하자 심장마비로 사망 甲이 규정을 위반하여 추월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추월을 금지하는 규범이 상대방 운전자의 심장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범이 아니므로 객관적 귀속 부정

## (2) 피해자의 고의적인 자기위태화

위험을 분명히 인식한 책임능력자인 피해자의 고의적인 자기위태화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객관적 귀속 부정

ex) 甲과 乙이 복잡한 도로에서 경주를 하다 乙이 운전잘못으로 사망한 경우 乙이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甲이 책임지지 X

## (3) 피해자의 양해있는 타인위태화

- 피해자가 행위자의 행위에 포함된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양해한 경우에 행위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 ex) 택시기사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 승객이 요구한 것이니까...

## (4) 타인의 책임영역

-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방지가 타인의 직업적 책임영역에 인수된 이후에 발생한 결과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 ex)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사의 실수로 사망한 경우

- '의사'라는 타인의 업적 책임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객관적귀속이 부정된다.

- < 제17조의 해석>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 인과관계의 확정은 '합법칙적 조건설'에 , 그 중요성은 '객관적 귀속이론'으로 수행!
- 1. 어떤 행위라도
- :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와 연결되고 그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 2. 요소 되는 위험발생
- :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결과발생의 위험, 구성요건에 대한 위험발생
- 3.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 : 그 행위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로 실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인과관계 부정 판례]

- 1."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살한 경우
- 2.운전수가 시동을 끄고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행위와 조수의 운전사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
- 3.카바이트와 물을 분리하여 이를 방치한 채 떠나 행위와카바이트폭발사고
- -)분리하여 놓았으면 충분하다.
- 4.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과 뇌종양을 앓고 있는 제자를 징계목적으로 뺨을 때린 행위와 급성뇌압 상승으로 사망.
- 5.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한 음독자살
- 6.완전한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인 채 경사진 도로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둣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

- 7.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안전거리 미준수 행위와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없다.
- -)안전거리를 지켰더라도 사망했을 것이다
- 8.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9.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바깥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트럭과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 10.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 여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 7가지를 예방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아니한다.